##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68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마약류 관리에	2207443	한지아	2025. 1. 10.	2025. 2. 18.
관한 법률	2201002	김도읍	2024. 6. 26.	2024. 8. 20.
일부개정법률안	2205592	이수진	2024. 11. 14.	2025. 1. 14.

-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2. 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1.)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매년 하 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고,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위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범도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 (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가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함(안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5항제2호).
- 나.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함(안 제3조제12호).
- 다.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함(안 제3조제13호

신설).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7).

### 법률 제 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를 각각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류관리의"를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로 한다.

제3조제2호 본문·제3호 본문·제4호 본문·제5호 본문·제6호 본문·제7호 본문 및 제10호다목 중 "알선"을 각각 "유인·권유·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알선"을 "유인·권유·알선"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제2호 중 "알선"을 "유인·권유·알선"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알선"을 "유인·권유·알선"으로 한다. 제47조 중 "알선"을 "유인·권유·알선"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귀를"을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하기"를 "지원하고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유지를"로, "교육"을 "보호·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용역·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51조의7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권유·

알선"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7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권유·알

세59소세1앙세4오·세6오 및 세7오 중 "알선 을 각각 "유인·권유·알 선"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알선"을 "유인·권유·알선"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알선"을 각각 "유인·권유·알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제10호의3부터 제10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6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널리 알리거나"를 "알리거나"로 한다.

-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제63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마약류관리에</u> 관한 기본목표	1. <u>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u>
및 추진방향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2. <u>마약류관리에</u>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2. <u>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u> <u>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u>
3. <u>마약류관리에</u> 관한 관계 기	3. <u>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u>
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	4마약류 관리와 오남
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	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
요한 사항	<u>리의</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u>알선을</u>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u>알선</u>,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2.	
	유인 •
	권유·알선
	,
3.	
	<u>유인·권유·알선</u>
	<u>유인·권유·알선</u>
4.	
4.	
4.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u>알선</u>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 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 하거나 매매를 <u>알선</u>하는 행 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 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

5
유인·권유·알선
6
<u>유인·권유·알선</u>
7
<u>유인·권유·알선</u>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나. (생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 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11. (생략)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 라. (생략)

10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유인·권유·알선</u>

- 11. (현행과 같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 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13.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권유하는 행위.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u>알선</u>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 4. (생 략)
  - ② ~ ⑤ (생 략)
-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 ~ ④ (생 략)
  -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매매·매매의 <u>알선</u>·수수· 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3. 4. (생략)
  - ⑥ (생략)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u>한다.</u>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
1
유인·권유·
<u>알선</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u>
1. (현행과 같음)
2 <u>유인 • 권유 •</u>
<u>알선</u>
3.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생	제42조(폐기 명령 등) ① (현행고
략)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2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압류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원료	3
물질이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u>알선</u> , 수수, 소지, 소	<u>유인·권유·알선</u>
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식품	   제47조(부정 마약류의 처분)
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지, 소유, 사용, 관	
리, 재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u>알선</u> , 수수, 투약 또는	유인·권유·알선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조제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마	

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및 임시

마약류에 대하여는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저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생략)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 재활사업"이라 한다)

3. • 4. (생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여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	생활
<u>의 유지·보호를</u>	

- 1. (현행과 같음)
- 2.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지원하고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의 유지를-----보호 • 교육-----
  - 3. · 4.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류 중독자를 체계적 • 효율적으 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 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 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신 설>

④ (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 행태조사) ① ------

활용할 수 있다.

- 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용역・연 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 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u>⑦</u> <u>제1</u> 항·
제2항 • 제4항
<u>.</u>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② (생 략) <신 설>

## ③ (생략)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
 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
 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8조(벌칙) ①
1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u>알선</u>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2. (생략)
-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 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 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 8. (생략)
- ② ~ ④ (생 략)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 3. (생 략)
-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 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 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 는 사용한 자
- 5. (생략)
-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

<u>유인·권유·알선</u>
2. (현행과 같음)
3
<u>유인·권유·알선</u>
<u>유인·</u> 권유·알선
5. (현행과 같음) 6

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 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 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u>알선</u>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u>알선</u>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 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9. ~ 14.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 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u>알선</u>,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

<u>유인·권유·알선</u>
7
<u>유인·권유·알선</u>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60조(벌칙)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방전을 발급한 자 3. ~ 6. (생 략)

②・③ (생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나. (생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 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u>알선</u>한 자
-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 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 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u>알선</u>,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 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유인·권유·알선</u> 5
<u>유인·권유·알선</u>

6. ~ 10. (생 략) <u><신 설></u>

10의2. ~ 10의4. (생략)

11. · 12. (생략)

②·③ (생 략)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②・③ (생 략)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3조(벌칙) ① ---

6.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u>10의3</u> . ~ <u>10의5</u> . (현행 제10호
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와 같
<u> </u>
11.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li> </ol>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li> </ol>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li> </ol>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li> </ol>
<ol> <li>~ 3. (현행과 같음)</li> <li>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li> </ol>
1. ~ 3. (현행과 같음)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1. ~ 3. (현행과 같음)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1. ~ 3. (현행과 같음) 4.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 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5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6. (생 략) <신 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생략)

\_\_\_\_\_

-----.

- 1. ~ 16. (현행과 같음)
- 17. 제3조제13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 상습적으로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제12호의 죄를 범한 자
-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제1항제17호의 죄를 범한 자
- ③ (현행과 같음)